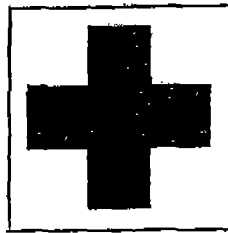

赤十字記章에 對하여

간호원으로써 알아야할 점

—《Anny Pfirte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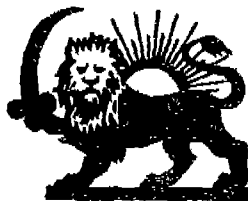
Head of the Medical Personnel Section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



국제적 보호를 표시하는
記章. 白地에 赤十字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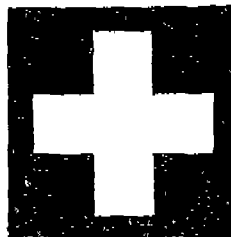
赤獅子太陽

(3)



赤
新
月

(4)



瑞西 연방 공화국의
國章. 赤地에 白十字

記章은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한 수단이다. 즉 어떤것을 지적하고 구별짓게 하거나 警告의 역할도 한다. 여하튼 어떤 記章이든 우리의 주의나 관심을 끌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태고적부터 사람들은 나무나 돌에 간단한 표적을 내어서 어떤 암호로서 받아들였다.

어떤 의미에선 이러한 전달의 방법을 상형문자나 고대 케르만문자 또는 후에 우리가 쓰게된 알파벳문자 등의 先祖로서 생각할수 있다. 記章이란 어떤 특정한 언어에 拘碍되는것이 아니므로 특히 국제적인 통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記章이 옳게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오늘날 가장 보편화된 記章의 하나는 白地에 그려진 赤十字이다. 이 記章이 생긴이래 얼마나 많은수의 간호원들이 그들의 복장에 부로치나 장식으로된 이 記章을 몸에 달거나, 일상 업무중에 이 記章이 그들의 눈에 띄었을 것인가?

이 記章의 기원과 그 뜻을 상기해 보는것도 적십자 창설 백주년을 맞는 오늘 뜻있는 일일 것이다.

◇起 源

1863년 제네바에서 「五人委員會」(후에 「적십자국제위원회」라고 부르게됨)에 의해 소집된 국제회의에서는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부상당한 환자를 돌보기 위한 의료요원과 器具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였다. 환자와 부상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고 重要하기 때문에 이 의료요원과 기구는 국제적인 보호를 받아야했고 세계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記章으로 표시해야만했다.

Dunant 와 최초의 기초위원회 위원들의 조국인 瑞西에 대한 敬意의 뜻에서 瑞西聯邦國旗의 색깔을 거구로하여 보호의 표시로 사용하게 된것이다. (Dunant, Jean Henri(1828~1910) 瑞西의 자선사업가, 적십자창설자, 1901년에 노벨평화상을 받음. 一역지註一). 十字의 배열이나 크기를 엄격히 규정짓는경우 保護記章으로서 주의할점은 十字의 네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한다는 것뿐이다.

1864년 8월 제네바에서 개최되었고 戰場의 부상병의 신분개선을 위한 제 일차 「제네바조약」을 맺게한 「外交會議」는 이 條約에 서명하므로써 白地 赤十字를 戰場에서의 軍隊의 표시설에 대한 保護의 표시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후 유럽의 여러나라에 생긴 戰傷 부상병 구호단체는 군대의료봉사 지원자의 훈련과 전쟁시에 필요한 의료기구를 준비하는 일을 수행했다. 이런 구

호단체들은 적십자를 그들의 記章으로 채택하는데 서슴치 않았으며 이렇게 하여 오늘날 각국의 적십자社는 90개에 달한다.

후에 이 운동은 다른 대륙으로 퍼졌고 十字를 종교적인 표시로 생각하는 몇몇 回教國에서는 十字대신 「赤新月」(Red Crescent)로 이란國에서는 「赤獅子太陽」(Red Lion & Sun)을 그들의 記章으로 쓰게 되었다.

이 「赤新月」와 「赤獅子太陽」은 국제적으로 승인되었으며 적십자와 똑같은 保護記章의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다음에서 언급되는 적십자에 대한 모든 것은 위의 「적신월」과 「적사자태양」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다.

◇意 味

적십자 기장은 두가지 뚜렷한 뜻을 가지는데

- 1) 보호의 표시로서
- 2) 「뗏목」로서

保護記章으로의 사용은 「제네바조약」중 當該문제에 관한 조항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으며 (제40조, 제42조, 제18, 20조) 국제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우선 軍의료사업은 保護記章으로 표시하며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쟁시 중립적 태도를 지키며 要員, 의료시설, 기구 및 수송기등에 보호의 뜻으로 이 記章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軍의료요원과 각국 적십자사에서 동원한 임시요원 혹은 다른 인정된 구호단체에서 이 사업에 종사하도록된 직원들은 원쪽팔에 권위있는 군당국의 지시하에 적힌 적십자의 완장을 두른다. 이 완장을 두른 사람은 이 기관의 규율에 따라 발부된 신분증을 항상 지녀야만 완장을 두를수가 있다.

전쟁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의 제4차 「제네바조약」 실시 이후 아직까지는 軍의료사업요원에게만 전적으로 허용했던 保護記章의 사용이 민간병원과 부설된 조항(제18조)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이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일반직원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 이경우 민간의료원이나 이병원의 직원은 완장과 신분증을 사용할수 있으나 이는 다만 근무중이거나 혹은 占領지역 및 軍作戰地域 내에서 뿐이다. 또 민간의료원은 주민의 자격으로서도 일반 보호를 받는다. 민간병원의 이와같은 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의사나 간호원은 완장이나 신분증을 가질수 없다.

민간병원 및 그 輸送便의 標示나 그 使用에 關하여는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다. 지면관계로 더이상 자세히 언급할수 없음이 유감이다.

「제네바條約」은 의료요원들에게 어떤 권리와 특전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

특전은 다만 환자와 부상자의 治療시 이들의 안위를 위해서 쓰이기 위함이다. 뿐만아니라 「제네바조약」은 의료요원들에게 권리만을 부여하는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규정된 의무도 지우는데 그이유는 누구나 다 아는바와같이 리륙 무지때문에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해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수가 있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이런 문제는 간호원에게만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간호를 받는 환자에게도 영향을 준다. 「제네바조약」에서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그들이 부여하는 보호를 상실하는 결과가 된다.

적십자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종류의 적에게도 해(害)를 끼쳐서는 안되며 害가되는 행위를 조장해서는 안된다. 또 保護記章을 악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제네바조약」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건물이나 운송기도 적십자 기장이 달린것은 군비의 목적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

保護記章을 달고있는 사람은 누구나 엄격하게 증립을 지켜야 한다. 자기 나라를 위한 애국적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동시에 적십자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각국 적십자사의 「뺏지」(badge)는 「제네바조약」 취지에의한 보호를 하지는 않고 保護記章과의 혼동을 피하기위해서 특히 전쟁시에는 축소된 작은 크기로 만들어져야 한다. (단추 크기의 「뺏지」나 부로치등으로) 또한 적십자사 건물은 커다란 旗를 휘날리거나 특히 건물의 지붕에 적십자를 그려놓아서는 안된다. 적십자 「뺏지」는 순전히 表示記章으로서 적십자사에 속하고 있음만을 의미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적십자 간호학교의 「뺏지」나 순전히 자선기관으로서의 적십자기관을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처럼 적십자의 保護記章으로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목적은 적십자가 表象하고있는 뜻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이 사용이 더 빈번해질경우 야기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적십자가 表象하는 상징적 뜻은 박애정신이다. 이 정신은 누구나 아는바와같이, 성의가 있는 사람들이 어느곳에 있던지간에 이 박애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갖지않는한 실현될수 없는 것이다.

Internal Nursing Review June 1963 Vol 10 No. 3. P. 11 에서